

제433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9일(목)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8)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1)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6)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3)	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8)	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0)	3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1)	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0)	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6)	3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7)	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9)	3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3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3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3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3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1191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8)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1)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6)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10시04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홍동곤 기후대응위원회 사무차장과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소위 자료 첫 번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의 사항을 첫 번째 자료에서 일괄하여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일단 4번 항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신 다음에 나머지 항목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녹색경제의 구현과 녹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 마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표에 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책 마련 시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중간에 있는 관련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보시면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사항별로 조사 항목들이 나열돼 있고요, 각각의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들이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개정안이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법에서 현재 부령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4쪽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기후환경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학교교육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재관 의원님 안이고요. 두 번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나열식 조문을 각호로 규정·구체화하면서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을호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안입니다.

보시면 현행 규정이 쪽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을호 의원님과 정혜경 의원님은 각호로 구분하면서 좀 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측의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 개정안을 통합하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는—이재관 의원님 안입니다—학교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사항으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포괄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은 ‘교육 전문인력’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이 인용 문구는 굳이 필요 없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사항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수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5명의 박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5명 이내의 인원은 적고 1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그리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두고 있는데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과 기후과학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관계 또는 지원체계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내용 구성과 뒷받침은 기후과학원 등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체계로 해야 실효성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기후과학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연구보고 내용을 제공하는 독립적 비상임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고 국립기후과학원은 실무적인 부분에,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정책 방향 제시로 역할 분담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3개의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탄소중립 정책, 탄소예산 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과 업무 중복성 및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여서—여기서 국립기후과학원은 밑에 보시면 지난 3월 1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대안)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이 과학원과 업무 중복성 및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독립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안으로 일단 통합의견을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안으로 수정했고, 위원장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마는 기후과학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인 점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후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15~20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의 조건으로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아직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후과학위원회 소관 업무에 미반영한 상태로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1쪽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지위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안들이 대체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규정했지만 통합의견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일단 규정을 했고요.

목적 사항은 위성곤 의원님 안 중심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부분에 있어서 3개의 개정안이 유사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있는 법률·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미반영했고요. 그리고 탄소예산에 관한 사항, 3개 개정안에는 있지만 이 부분도 통합의견에서는 미반영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인원 부분은 15~20인, 위원 조건은 이소영 의원님 안과 차지호 의원님 안을 모두 통합을 해서 규정을 했고요.

임기 부분은 2년에 연임 가능으로 그리고 지원조직 부분에서는 기후과학센터 설치에 관해서 위성곤 의원님 안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5쪽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4번 항목입니다. 25쪽의 녹색채권 발행 근거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국형 녹색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정의된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조문 위치는 김소희 의원님 안과 같이 별도의 장에서 규정을 하고 녹색국채와 녹색채권에 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의 박지혜 의원님 안과 김소희 의원님 비교 보시면 발행주체에 대해서 박지혜 의원님 안은 정부만,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시면 박지혜 의원님 안은 녹색채권은 기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녹색채권은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정부 및 지자체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위·기후부가 채권 관련 원칙을 제정·공포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그리고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우측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현재 발전사, 제조사, 건설사, 지주사 등도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서 오히려 녹색채권 발행주체가 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녹색국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민간이 발행주체가 되는 녹색채권과 구분해

서 녹색국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통합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채권은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의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제18호·제19호의 활동이란 밑에 보시면 김소희 의원님 안에 따른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의미하는데요. 목차 5번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즉 녹색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또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자에게 정부가 이자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의 기금 재원 추가 및 별도 계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녹색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녹색채권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통합 대안에 관해서 1항, 2항 그다음에 4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3항,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8쪽 문언을 보면 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6항의 통합의견에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데 지정의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주체를 집어넣어야지 문언상으로, 조문상으로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21쪽, ‘기후과학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9조의3 1항에 있습니다만 여기 각 호의 내용에 1호부터 5호까지 돼 있습니다만 기후과학위원회에서 분석·예측하는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4호에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물론 독립자문기구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영역이라고 해서 일단 국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법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1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항, 기후환경 관련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항, 기후과학위원회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차관님이 요청한 사항으로 지정 주체로 ‘정부는’을 추가해야 되는 것 그거는 동의하겠는데 그다음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李憲昇 위원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8페이지 ‘정부는’ 그거는 좋고, 21페이지

지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것 관련된 사항에서는, 19조의3 1항 4호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대응위원회 사무처장이 의견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차장 홍동곤 기후대응위 사무차장입니다.

4호의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기후과학위원회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놔는데요. 저희가 유사 입법례를 찾아봤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또는 다른 행정부 소속 위원회의 업무 중에 국회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한다라는 유사 입법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시로 국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 같은 조항으로 두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에 요청하는 것을 업무에다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제실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삼권분립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유사 입법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차장 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당초 아마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행정부이기는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독립된 자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차장 홍동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국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더 반영한다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이런 입법례가 없다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직접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서 자문을 얻을 방법이 많고 본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 위원회에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문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이 새로 오셨는데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지 신고도 안 하시고…… 인사 기회를 드려야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보임하셔 가지고 초반에 인사 기회를 드리려다가 먼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종배 위원 이렇게 소위에서 박지혜 소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새로 보임하신 이종배 위원님을 잘 모시고 위원회 활동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기된 쟁점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따른다면 국회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국회만 삭제하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만 규정하는 걸로 규정하면 됩니다.

○李憲昇 위원 국회만 빼자는 거지요, 그냥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이렇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방금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수정의견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항에서 1호에 보시면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및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 제시된 이소영 의원안이나 차지호 의원안에는 국가 탄소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 두 의원님 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및 진전동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평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1호에 대해서 국가 탄소예산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은 탄소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부 국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 합의나 산정기준에 관련해 갖고 전 지구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아직 확립돼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탄소예산 관련된 부분이, 배출량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잔여배출량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존 조항에 따라서 충분히……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및 진전동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탄소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제해도,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및 진전동향에 대한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쟁점, 저희 위원회에서 통일된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을 정부가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계셔서 통일된 방법론을 만들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념을 좀 법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국가 탄소예산을 산출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판결을 할 때, 거기도 SRU라는 국가자문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산정한 국가 탄소예산을 활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어떤 방법론이 최선의 방법론인가를 탐색하고 나름의 숫자를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어 하나 정도는, ‘국가 탄소예산,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및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들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탄소예산에 대해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지침, 일부의 디렉티브(directive)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행정규칙 이런 식으로 근거에 따라서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예산에 대해서 기후과학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

면 그때 정식으로 법에 반영하는 게 나올 것 같더라는 판단입니다.

○**김소희 위원** 추가 의견……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저도 정부 측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탄소예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정권에 따라 탄소예산이 들쭉날쭉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굳이 탄소예산이라는 단어를 이 기본법에 넣어 가지고 정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기후과학위원회에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 준다면…… 지금 밑의 산하기관에 기후과학센터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기후과학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싱크탱크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기후과학위원회에서 탄소예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탄소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숙의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게 좋을지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이 쟁점과 관련해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제가 좀 늦게 왔습시다마는…… 원래 탄소예산 문제는 2035년 NDC를 결정할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시다마는 아직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고 국제사회도 아직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일반화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후과학위원회는 정책 자체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시다마는 탄소예산도 당연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기후과학위원회의 어떤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내용이 잘 완성되고 정책 수단으로까지 담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고 위원회는 당연히 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해야 될 임무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좀 담아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계속 그 쟁점이니깐 말씀드리면,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19페이지의 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그 과학위원회가 분석·예측할 것에 대한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1호에 국가 탄소예산,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및 진전동향 등에 대한 사항을 임무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방법론이 통일되지 않고 이런 류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드린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면 일단 기후과학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탄소예산과 유사한 연구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 주셨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과 방법론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탄소예산이 영문으로 카본 버짓(carbon budget)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학문적인 의미라든가 정의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관점에서는 아마 이해하기로 감축목표 설정·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목표 등의 설정, 이와 관련된 방법론 이런 표현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 부분은 의견 주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일단 정부 측 대안에 대해서 저보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국가 탄소예산에 대해서 계속 영어단어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탄소예산에 대해서 방금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탄소예산 개념이 국제적으로 딱 부러지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국제적 기준이 없다면 그것을 정부 측에서,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용 중의 일부가 탄소예산 배분에 관해서 국제적 합의나 객관적인 도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는 이유로 아마 당시 청구인 주장에 대한 기각 의견이 좀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탄소배출 예산 배분 관련 현재 배출량, 누적 배출량, 인구, GDP 이런 다양한 기준이 동원은 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부 대안대로 정리하고요.

탄소예산 관련해서 특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3항 기후과학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의견 더 있으실까요?

○李憲昇 위원 21페이지의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에서 ‘국회 및’을 삭제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국회에 있는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약자가 들어가서 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입니다.

○李憲昇 위원 풀네임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법조문의 기술상 아마 위기대응위원회를 다음 조항부터는 약어로 들어가는 걸로……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4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는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차 5번 항목, 34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내용 끝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의 목차 5번 항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0장의2를 신설해서 기후금융 촉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면 제58조제2항에서 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무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8조 2항 말고도 현행법 제34조 2항에서도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따라서 별도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58조 2항을 공공기관의 협조의무로 바꾸면서 제10장의2를 신설해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이 기본법에서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협조의무로서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정책집행 수단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본법은, 첫째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에서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제도·정책의 전체 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 정책 수단은 별도의 개별 법률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34조에서도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에 금융정책 집행 수단이 들어가는 경우, 즉 기본법의 주무부처는 기후부고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집행부처입니다, 법률의 소관 체계와 정책집행 구조 간의 정합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장의 위치는 이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6쪽 보시면 먼저 기후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다음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후금융 활동의 종류를 가, 나, 다, 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그리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금융회사 정의규정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융권 등 민간에서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수용성이 높은 용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규정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으로 각각 나누고 녹색금융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요, 전환금융은 녹색분류체계 및 정부가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정안에서 기후금융 용어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위원회에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즉 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 주기의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촉진위원회의 구성은 총 15인 이내로 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으로는 차관급 공무원 등과 기후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담조직으로서 금융위원회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게끔 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와 협의해서—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되겠습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기본계획과의 내용상 중복 여부 및 촉진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간 구성·심의상 중복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의 의견이 신중 검토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의견에는 해당 내용은 미반영한 상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공금융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국책은행 및 국가 보증기관의 자금 우선공급과 우선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 자금 우선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요. 2항은 우선 보증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항은 경영실적평가 반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금 공급 및 보증 실적에 해당 기관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자금 공급기관으로 규정된 국책은행도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일례로 산업은행의 경우 채무보증, 지급보증, 해외건설보증 등의 보증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1항 및 제2항, 즉 자금의 우선공급과 우선 보증 항목을 통합해서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4항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산 항목을 직접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관 간 형평성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적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 43쪽 보시면 금융회사의 책무와 관련해서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금융상품 개발,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책무와 관련해서 안 제2조제19호에서 금융회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역과 규모가 상이한 금융회사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 책무 의무를 노력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 보시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과 관련해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원칙을 규정한 자발적인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분류체계 적용을 달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만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일단 수정을 했고요.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표에 보시면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국회 보고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기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부위원회이기 때문에 보고받을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후부도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기후금융 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권자를 정부로 수정해서 기후금융 업무 유관 부처가 동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안 제74조의2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조문, 38쪽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조문입

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할 시에는 국회 보고 조항도 연계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55쪽의 목차 6번 항목,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숫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입법례가 이미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서 예타를 하거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숫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시행 관련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방식으로든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비용 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 더 검토한 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개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대기 중에 1t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행 규정은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 관련 사항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정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수정의견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산출 방식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후대응 정책의 객관적 연구·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기구인 국립기후과학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 대안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국립기후과학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후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수정의견 표를 보시면 57쪽의 정의규정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58쪽의 국가전략에 포함된 사항에서도 삭제를 하면서 36조의2 국립기후과학원과 관련한 조항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을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포함하면서—괄호를 보시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대안 반영하실 때 대안 반영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삭제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 개정 관련해서 정의규정에서 빼고 국립기후과학원 내용으로 수정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필요해서 통합 의견에서는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6항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 그다음에 7항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통합 의견에 동의합니다.

5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사항 관련해 김소희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서 금융위원회 주관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이 개별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별법의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금융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의 조항,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의 조항과 그다음에 선언적 의미에서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김소희 의원안에는 기후금융이라는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서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이라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관련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후금융 정의 조항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으로 그대로 활용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후금융 촉진에 관련된 조항들은 전부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기본법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는 것은 기본법 체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삭제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8쪽의 74조의3(기후금융 촉진위원회)도 기존의 금융위 주관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와 기능 중복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기본법 체계를 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74조의4에 대해서는 우선 자금을 공급하는 부분과 보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2쪽의 74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관련해서는 1항에 '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을 두었는데 의무 조항보다는 '관련된 상품 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조항으로 두는 게 오히려 금융활동 촉진을

하는 데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74조의7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관련된, 녹색 분류체계는 기업 규모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녹색 분류체계 적용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안을 드렸고요.

74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른 부처까지 포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체를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정부’를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47쪽의 58조 제2항 ‘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은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8조 제2항은 김소희 의원님께서 ‘기후 촉진에 관한 1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위원회에서 참석했는데 의견을……

○소위원장 박지혜 예, 금융위원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전요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금융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소중립법 58조 2항의 경우에는 존치 의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기후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취지를 살려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 법안이 아직 정부 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희는 앞으로 노력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기후금융 촉진법 제정안에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이번에 그 취지를 살려서 탄소기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금융지원에 관한 조항과 금융회사의 책무에 대해서 조정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취지를 살려서 기본법에 담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별도로 기후금융 촉진법이 제정된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새로 제정되는 법에 이관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입법이 제정법이 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공공금융지원과 금융회사 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소관으로 분명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조항 외에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별법 정립할 때, 제정할 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현재 제정법에 들어가 있는 기후금융의 안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으로 분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분리된 정의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어서 지금 당장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이 법체계상 기후금융이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조항에서 받아서 적용하는 그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당장 의견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있는 기후금융의 정의에 대해서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68조의6과 68조의7은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정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기후금융 촉진법상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을 정확히 해야 일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후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관이 명백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조항들은 삭제를 하고 공공금융지원과 금융회사 책무를 담은 두 조항에 대해서 그 취지를 담아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이 법안을 제가 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58조 2항을 보시면 ‘따로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기후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 법안에 이렇게 ‘법률로 정한다’ 외에는 답이 없어서, 다른 적용이나 정의로운 전환과 달리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진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로 법안을 냈는데 그게 정무위에서 계속 계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K-GX라고 뭔가 예산을 짜겠다고 정책을 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이 탄축법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야겠다 해서 제가 최소한의 범위로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58조 2항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 수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따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금융이랑 전환금융이랑 다 포함해서 기후부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금융을 지원하겠다는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해서 녹색금융·전환금융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제가 기후금융이라 한 건 녹색금융 플러스 전환금융 다 합친 것을 기후금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다배출 산업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금융이 필요하다는 트랜지션 파이낸스(transition finance)가 있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파트에서 녹색금융하고 전환금융을 구분해 가지고 항목을 따로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융위에서 나중에 따로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땡큐고, 여기서 빠진 내용들을 다 합쳐서 기본법으로 추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으나 지금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기후부에서 얘기한 기본 사항들을 넣어 주시는 그 방향, 뺄 것은 빼고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넣어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시동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진짜 정신 차리셔 가지고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팩트 몇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전사를 보면요 25년도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게 20년 이후 발전 공기업들 5개잖아요. 거기서 의결한 17건의 설비투자 총액은 1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집중이 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40년까지 폐지하게 되면 대체에너지로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계획은 5개 발전 공기업들은 전무했구요.

현재 아시다시피 5개 발전 공기업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5.6%에 불과하거든요. 우려되는 것은 기후금융을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녹색금융은 대체로 녹색분류체계의 재생에너지 부분이 주된 대상이 될 테고 전환금융의 대상은 CO₂ 다배출업종 중에서 1순위가 화석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미 금융이 전환 부분으로, 특히 화석연료 부분으로 전환 부분이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발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4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게 된다면 향후에 전환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걸 전수조사와 함께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석탄발전소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LNG 복합화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면 언제 어디로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된다. 그런데 정작 재생에너지, 그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쪽의 전환 계획은 매우 미흡하고 불철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게 되면 나오는 회처리장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만 평씩 됩니다. 그다음에 적탄장 또 실제 석탄발전소가 폐지가 되면 그것을 계속 한정 없이 둘 수는 없으니까 다 철거하게 될 텐데 그런 유후부지에 대한 전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걸 요구했는데요 차관님도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금융 부분까지 전환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구분되면서 발전 공기업만 국한해서 본다 하더라도 대체로 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하는 데로 쓸릴 수밖에 없다.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목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기후금융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녹색금융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전환금융으로 다 쓸릴 테니까.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 부분이 제대로 정합성 있게 대응을 유도하거나, 그러니까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규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허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환금융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면 화석연료를 줄여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NDC 목표와 전기본계획 그런 전환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자고 하는데 전환 계획과 연동시켜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기후금융 그것을 기후부나 금융위는 좀 더 검토해 보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고 세분했을 때 이것이 가져올 편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것을 보증하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기후금융을, 정무위가 좀 늦어지니까, 금융위에서 ESG 공시 같은 제도들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져왔는데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현실에 있어서 적용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보완장치를, 안전장치를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녹색금융하고 전환금융에 대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녹색금융 같은 경우는 녹색 택스노미에 따라서 분류체계라든가 활동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맞으면 녹색금융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 녹색을 가장하거나 그린워싱 부분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환금융에 있어서는 전환금융의 전환 경로를 설정하거나 전환 로드맵을 설정,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탄소를 얼마까지 감축하겠다는, 탄소를 어떤 경로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제시하게 할 거고요. 그와 연계시켜서 금융 조건, 지원 여부라든지 조건, 금리들을 다 연계할 수 있고 아니면 목표나 제시했던 것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일정 정도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금융의 대상 범위와 전환금융 지원 방식,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해서 가급적이면 전환금융을 통해서 석탄발전소가 양수발전소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전환 경로에 대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하고 하고 있고 금융위에 관련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후속 조치 작업들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법안은 그렇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전 공기업들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실제로 LNG로의 전환은 다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유류부지나 설비나 인력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서 되게 루즈하게,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발전공기업 한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폐지하자, 말자, 어차피 이것 수명 연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그 부분의 폐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타이트하게 전환을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사전 대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더 지연되지 않

고 빨리 효율적으로 전환되도록 부 차원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종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의 굉장히 시급한 중요성 때문에 김소희 위원님이 굉장히 고심 끝에 내용을 제안해 주셨다고 보고요.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체계를 너무 넘어서는 세세한 정책 수단들 또 법령들이 담겨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제안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의 근거라도 빨리 마련하자라는 취지들을 존중한다면 금융에 대한, 기후금융이라고 하든 또는 녹색금융, 전환금융이라고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조항을 담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금융 지원의 근거 또 금융회사의 책무 이런 정도를 담는 내용들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요.

기후금융 개념과 관련해서는 저도 과문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녹색산업이나 기술 또는 기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개념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의도 하고 다시 규정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 사실 틀렸더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분리해서 정의를 하고 금융적으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전환금융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법안 추진에 맞춰 가지고 기후금융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해서 NDC 35에 맞춰 가지고 정책금융이 720조 원 지원하는 걸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텐데요. 지금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개념을 분리해 가지고 정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여기에는 특정한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법조문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위원님들 의견에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조정을 하고 전환금융하고 그다음에 녹색금융 이쪽을 많이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담기는 법안에서 공공금융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부여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가 맞는 방향이어서 바람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소관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소관을 금융위 공동소관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제가 필요한 나머지 법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 의견을 드리면 녹색금융이나 전환금융 정의와 관련해 갖고는 현재 정의 조항이 있고 법령에서 명시적인 테피니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금융 지원 및 금융회사 책무 조항에 대해서 노력조항이라든지 원칙적 조항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74조의7, 74조의8 여기 2개 조항은 금융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금융위원회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에 ‘정부’로 들어가서 일단 금융위원회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현재 이 역할은 기후부와 중기부도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등의 요구도 녹색금융, 전환금융 관련해 갖고는 현재 중기부나 기후부, 금융위 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를 정부로 바꿔 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우려사항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노력 조항 2개, 74조의4, 74조의5를 정부 수정의견으로 다시 드렸고요 그다음에 74조의7과 74조의8은 정부로 주체를 바꿔서 다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사실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금융위원회 의견이 53페이지의 74조의7, 74조의8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이셨던 건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금융위원회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전요섭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장이예요?

탄소중립 기본법이 나온 지가 한 4년 됐나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때서부터 이걸 법률로 정한다 이랬으면 빨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법률로 안 정하니 금융위에서 노력을 안 하고 정무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이걸 기본법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예.

○이종배 위원 금융위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금융위에서는 금융위가 해야 되는 걸 자꾸 빠지려고 이것 빼 줬으면 좋겠다, 저것 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고. 내 생각은 그래요. 금융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극적으로 이런 기후금융이 이루어지고 축진이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무도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 보나 마나 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 하나도 노력을 안 할 것 같아. 이 법률도 ‘정해야 된다’ 그랬으면 금융위에서 노력하고 정무위에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법률로 따로 안 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꼭 움직일 수 있도록, 축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금융위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기후금융을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위에서 우리가 법률을 만들 걸 안 만들고 여기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걸 여기다 다 담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조금 덜 담길까, 같이 덜 위일까 이런 생각 가지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본법이니까……

원래 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에 담아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다만 담는 것이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자꾸 옆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도 아까부터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앞에다 대고 좀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 사실 저희가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무위 사정상 김소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지연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들의 자세한 내용들이 탄소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기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기후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에 거의 담기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후금융법을 별도로 할 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기후금융의 체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으로 금융위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그런 판단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가 68조의6이나 특히 68조의7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어를 금융위로 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을 해 왔던 바고요.

의원안에 있어서는 74조의7과 74조의8인데요. 금융위가 주관이 돼서 주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서 이 조항들은 사실 기후금융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탄소법이 기후금융법을 같이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후금융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00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저희가 720조까지 늘려서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해 드린 바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후금융 부분을 현재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추후에 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한 법은 별도 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저는 오늘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환금융 관련해 가지고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고 매번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늦어지고, 물론 저희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신 환경부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의원께서 기본법에 디테일하게 담은 부분,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따로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낸 세세한 부분을 담은 법안을 따로 준비를 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김소희 위원 정무위에서?

○조지연 위원 예, 정부랑 협의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법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국회와 정부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종배 위원 그 법을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면 안 돼요? 정무위에서……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윤한홍 위원장님의 허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종배 위원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정무위 좀 열라고 그러세요. 작년 12월부터 한 번도 안 열렸다 하더라고요.

○이종배 위원 그래요?

○김정호 위원 금융위만 타할 게 아니고 정무위에서 좀……

○이종배 위원 그 법을 우리가 갖고 오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위원님들 말씀 취지를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김소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셨고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따로 법안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게 진행이 늦어지고 또 기후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서 정말 핵심 조항만 넣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K-GX 할 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정안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들어 보면 사실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법률로서 규정한다는 그 법률에서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심의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

혹시 지금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추진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로서는 관계부처가 다른 사항들, 선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74조의7 그다음에 74조의8 여기에 아마 금융위원회는 삭제 의견 또는 금융위원회를 주체로 명시해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관계부처 간, 정부 간에 현재까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2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정부 수정안대로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53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53쪽 74조의7, 74조의8은 당초 금융위원회 국장께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삭제 의견으로 하면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김소희 위원 74조의7하고 8항이 지금 수정의견으로 68조의6하고 68조의7로 된 거지요?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로만 바꾼 거지요? 정부는 기후부가 됐든 금융위가 됐든 다 포함이라고……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금융위 의견이 삭제 의견이라서 최종적으로 삭제하자는 제안을……

○김소희 위원 둘 다 삭제를 해 달라는, 이것을 다 들어내는……

○김정호 위원 금융위 안이 그렇고.

○김소희 위원 제 안은 원래는 금융위의 역할을 좀 더 넣어 놔었는데 기후부는 수정의견으로 특정을 지정하지 말고 그냥 정부로 해서 다 통합하자 하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들어내자는 요청이신가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논의가 추후 필요하니까 이 조항은 빼고……

○김소희 위원 이것도 그냥 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소희 위원 어차피 따로 법안을 또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빼고 그냥 앞에 것 메인으로라도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그걸로 받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부 간에 협의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받아 주시는 것 같은데……

○김소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메인 앞에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추후 법안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법안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금융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720조 기후금융 확대 계획, 생산적 금융계획 발표한 것 말씀하신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후금융 생산적 금융의 일부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720조는 기후금융 전체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건 기후금융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존의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 NDC 이행 그리고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쓰여야 된다, 720조인데 그레이 한 부분에 한 700조 쓰고 20조는 녹색금융 쓰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강조하신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다

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후특위에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이신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직접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자본시장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오늘 김소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양보하셔서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법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법만 통과시켜 가지고는 기후금융이 작동을 실제로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도 58조인가요? 법률 제정에 대한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

○**조지연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야당에서도 정무위를 통해서 법안 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소위원장님, 아예 기후위기특위에서 ESG 공시제도 관련해서 금융위나 환경부나 산자부까지 한번 해서 관련된 현안보고도 받고, 3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이고 4월 중으로 확정 발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건의를 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ESG 공시제도에 관한 그런 보고를 받고 현안보고를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해 주시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의견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항에서 9항까지는 저희가 심사를 진행했구요. 의결정족수를 좀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음 10항부터 법률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정족수 되시면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10항부터 14항까지……

○**소위원장 박지혜** 9항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9항까지는 앞단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10항부터 14항까지,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1쪽을 먼저 보시면 지난 공청회에서 적응법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범 부처 컨트롤타워 마련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연계·통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구요. 그 외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걸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2쪽은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먼저 보시면, 입법 취지와 배경에 있어서는 4개의 제정안들이 유사합니다. 특히나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게 이 제정법안들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명에 관해서는 대부분 기후위기 적응 또는 안전, 회복력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다 특별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감시·예측, 취약성 조사·분석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하고요. 기후위험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차지호·김소희 의원님 안은 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공개 시에 평가서 1년 이내 작성·갱신 내용의 특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험 평가를 어디에 반영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대체로 적응대책, 행정계획 등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지호·김소희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국가 그리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 안은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국가기후위기 정보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정안은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 지정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활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내용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평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차지호 의원님 안과 김소희 의원님 안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주류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조지연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 등에 대한 적응 주류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더 담겨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후회복력 증진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본법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차지호·김소희 의원님 안은 개정안 16조에 취약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 안은 기본법에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결과까지 반영하도록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차지호·김소희·조지연 의원님이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3개 제정안이 공통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해서 다 보급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희 의원님 안에 조금 추가된 내용은 정부의 기후보험 운영에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까지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 안은 노력 명시와 함께 정부 또는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근거까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은 조지연 의원님 안에서 추가적으로 담고 있고요.

기타 평가도구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측의 3개 의원님 안이 산업계 대응력 강화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대체로 공통사항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김소희 의원안이 담겨 있는 이유가 기후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교 설명을 드렸고요. 조문별 검토 넘어가시기 전에 먼저 의결 절차 하시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의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총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계속 법률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8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제명,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명을 보시면 다들 특별법안으로 제안을 하셨지만 우측 통합의견 보시면 제정안의 내용을 가장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게 기본법의 예외·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실행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법률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정법의 목적 규정입니다.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 제시 그리고 기후회복력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4개의 제정안들이 각각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면 4개의 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범목적에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 내용을 다 포함했고요 그리고 제정안 취지를 고려해서 예상하지 못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예상 가능한’이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 표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통합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로 규정했구요.

기후위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영향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적응은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회복력은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조지연 의원님 안의 기본법에 따른 기후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도 4개 제정안이 별도로 각각 다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용어 정의 다 필요하고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경우에는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 각각 다 통합해서 규정하면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표의 수정의견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칭의 활용 필요한 부분은 또 조문을 다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기본원칙입니다.

기본법과의 유기적 연계,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반 평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사전대비 및 지속적 평가, 취약계층 우선 대책 추진,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등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4개 제정안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유사하게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표를 보시면 차지호 의원님 안과 김소희 의원님 안의 내용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은 두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하되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의무를 강조하는 조지연 의원님 안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다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기후영향 분석 및 예측, 지자체의 적응시책 수립·이행,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취약성 진단 등에 대한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단위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까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으로서 일단은 4개의 제정안을 모두 담아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15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사항 부분 보시면 현행 기후위기 적응 등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에서 4개의 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면서 약칭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31쪽,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까지 설명드리고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활용,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 등을 위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정보 연계·활용 그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을 제정안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체를 기후부로 하느냐, 정부로 하느냐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느냐, 기후부장관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통합의견을 보시면 4개의 제정안을 모두 반영하면서 특히 조지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했고요. 기후부 의견을 반영해서 주체를 정부로 하고 기후부장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통합의견을 다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후부 의견이 매년 현황·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 그 ‘매년’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도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옆에 32쪽입니다.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입니다.

이 부분은 4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표에 보시면 유사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마는 김소희 의원님 안에서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표 하단의 조사대상 보시면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그리고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산업단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측 통합의견입니다.

일단은 김소희 의원님 안, 조지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작성을 했고요.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 시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의견을 반영했는데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그리고 인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료 등까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을 정비하면서 안 제8조는 기후영향·취약성 분석, 안 9조는 기후위험 평가로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3쪽에 보시면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교에 있는 표를 보시면 주체를 기후부 장관으로 하느냐, 정부로 하느냐, 좀 다르고요. 그리고 차지호 의원님 안과 김소희 의원님 안은 다른 게 IPCC 보고서 공개 시 종합평가를 1년 이내에 작성·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제정안에서 임이자 의원안에 더해서 평가결과를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 계획, 시·군·구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측의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했구요. 조지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IPCC 보고서의 주요 변경사항 반영 및 종합평가서 작성을 위한 예산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내 갱신 주기 이 조문은 좀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문 정비 사항들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34쪽 보시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관을 신설하거나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은 관리원 신설, 나머지 3개 제정안은 센터 지정으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측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서 센터를 지정하는 안으로 일단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통일 등 조문 정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마저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적응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주체를 기후부 장관으로 하느냐, 정부로 하느냐 이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맨 우측의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서 조지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일단은 주체를 정부로 통합했구요. 조문 순서 정비가 필요해서 수정의견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문 순서를 다시 한번 재배치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조지연 의원안을 사랑하시는군요.

(웃음소리)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정부 측 의견까지 들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통합의견에 모두 동의함

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이견이 있는데요. 15쪽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정안 제6조)입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의 적용 부분은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정안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의견만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11조까지에 대해서 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6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자료에 보시면 이 부분은 아마 차지호 의원님 안과 김소희 의원님 안일 텐데요. 부칙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칙 검토 통합의견에서 삭제하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 부분은 삭제해 났습니다.

○김소희 위원 의견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부칙에서 해결되면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가 의견 없습니다.

○조지연 위원 부칙에서 이게 삭제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굳이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34페이지 10조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이 법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후부는 조직적인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우선 기후과학원이 새로 생겼고 거기서 적응 역할을 또 하도록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적응센터라고 해서 현재는 과학원하고 KEI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센터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기후과학원 내지는 KEI에다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역할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은 KEI가 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KEI도 있고 국립환경과학원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2개 나뉘져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나뉘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2시까지만 진행하기로 해 가지고……

○김소희 위원 빨리하시고 통과시킵시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일단 끝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보시면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후부장관에게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는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과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조지연 의원님 안이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측의 통합의견 보시면 4개 제정안을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 기후부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및 기후예측 정보는 안 제8조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간명화를 위해서 삭제하고요. ‘기후위험지도 작성’ 이 문구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으로 해서 지도 외의 시각화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단은 기후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 수정 사항들을 반영해 왔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넘겨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 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을 함께 공개하고 기후부장관이 필요한 조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통합의견 보시면, 지금 주체가 표에 보시면 기후부나 정부나 이게 각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서 일단 개발 주체를 정부로 통일해서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후부 의견이 평가·공개 주기를 2년이 아니라 5년 이런 수정의견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잠정적으로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옆에 58쪽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계획 전반에서 기후적응 전략과 요소를 반영하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및 점검·진단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개의 제정안이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주체를 정부로 하느냐 지자체까지 포함하느냐 그리고 조지연 의원안이 행정계획 범위까지 주류화 평가 실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우측의 통합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서 일단은 기후부 의견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 주류화 평가 대상에 지자체 행정계획이 포함되므로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

로 해서 일단은 규정을 했고요. 기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누구에게 요청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후부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류화’라는 용어를 ‘확산’으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반영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59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4개 제정안이 비교가 돼 있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4개의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서 조지연 의원님 안이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하되 기후부 의견까지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극한기후’ 이 용어는 정의 규정 삭제에 따라서 같이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후부가 했습니다.

옆에 60쪽 보시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관련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지원사업 수행 시에 실태조사 등의 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입니다.

정부, 지자체, 취약기관에 각각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전반을 수행할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두도록 하는 차지호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라는 우측 통합의견을 보시면 기후부 의견이 기본법에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해서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작성했고요.

옆에 62쪽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청회에 나왔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가로 신설한 내용인데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심의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광역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개 제정안 등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통합의견으로 3개 제정안 모두를 통합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의무화 및 인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광역 그리고 광역협의회를 각 지방에 설치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방협의회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지방기상청 그리고 기상지청까지 포함하는 기상청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가 협력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옆에 기후보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제정안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 개발 지원 보급 노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제정안 모두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소희 의원님 안과 탄소중립기본법의 김소희 의원님 안이 또 같이 병합 심의되고 있는데요. 기후보험의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측의 통합의견 보시면 4개 제정안 및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 의원님 안 모두를 통합하면서 기후부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조지연 의원님 안의 기후보험 특례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근거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후부 의견은 통합의견에 다 동의하면서 특히 기후보험 운영 계획과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추후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통합의견에는 삭제해서 좀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오전까지만 하자고 그랬는데.

○김소희 위원 계속하시지요.

○李憲昇 위원 계속해서 끝내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어디까지 하시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일단은 65쪽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이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4개 제정안 다 통합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했고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보칙과 부칙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소희 위원 부칙이라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조지연 위원 다 했네요.

○李憲昇 위원 다 하지 뭐. 토론하고 끝내자, 통과.

○김소희 위원 이것 다시 보기가 좀 그런데……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정법이기도 하고 어차피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할 거라서……

○이종배 위원 더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 한 번 더 진행해 가지고……

○李憲昇 위원 아마 한참 될 건데……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조지연 위원 제안설명까지만 하고 끝이 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정부 의견부터 해서 토론을 다음 차수에 진행하는 것으로……

○李憲昇 위원 지금 별로 복잡한 것 아니면 해 버리지요.

- 조지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앞의 내용은 의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견이 없다라고 넘어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너무……
- 李憲昇 위원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지요.
- 조지연 위원 아니, 정부 측 의견 들었고 아까 전에 초반에 5개까지는……
- 이종배 위원 그래도 속기록이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 소위원장 박지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희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정부 측 의견부터 듣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지요.
- 소위원장 박지혜 예, 대체토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종배 위원 관계없어요. 의결 꼭 안 해도 돼요.
-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김소희 김원이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현승 이종배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전요섭